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동 개정조례안은 2007. 8. 17.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 8. 21. 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이유

- 교육비를 납부 받은 자가 납부자에게 소득공제용(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 없이 발급하는 유사한 다른 증명서 발급(보험료, 카드사용 증명서 등)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임.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07.5.14~2007.6.2
 - 예산조치: 18,626천원(수입 감소)

3. 개정 요지

- 1통에 300원씩 징수하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안 별표)

4.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수수료)에 따라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발급받는 자에게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교육비를 납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자에게 소득공제용(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유사한 증명서(보험료 및 카드사용증명서 등) 발급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고,
- 납부자가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납부자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 규정하여 발급수수료 300원을 징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별표 제3호 “다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삭제를 요청하고 있고,
- 교비납입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자체수입중 수수료 수입에 해당되어 2006년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를 합하여 6만2천여건에 1천862만여원 정도의 수입이고, 학교당 평균 1만5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를 감면할 경우 자체수입이 그 만큼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조례의 별표 제3호 “라목”에 학비감면증명 수수료를 3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 바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감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학비감면의 취지와 맞지 않고, 학비감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학생수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동조례의 “다목”과 “라목”을 함께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음 페이지에 계속)